의안번호	제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11. 15.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호

제출연월일 : 2019.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충남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

나.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24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출산보육정책과(041-635-4547)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24개월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 중 “충남아기수당”을 각각 “행복키움수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이 영 임
	아동보육친화담당	최 영 숙
	담 당 자	이 정 진 (746-535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24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충남아기수당” 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 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신청)	제3조(수당신청)
충남아기수당은(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행복키움수당은(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수당지급)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논산시 거주 36개월 미만 아기에게 수당지급

※ 1차 확대(2019년 11월) : 만 24개월 미만

※ 2차 확대(2020년 11월) : 만 36개월 미만

나. 추계결과

○ 2019년 충남아기수당 지원 : 953,700천원

- 100천원×9,537명=953,700천원

계	지급인원											
	2019.1	2019.2	2019.3	2019.4	2019.5	2019.6	2019.7	2019.8	2019.9	2019.10	2019.11	2019.12
9,537	706	683	687	690	700	696	688	691	689	699	1,306	1,302

○ 2020년 충남아기수당 지원 : 1,683,800천원

- 100천원×16,838명=1,683,800천원

계	지급인원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2020.9	2020.10	2020.11	2020.12
16,838	1,283	1,282	1,281	1,293	1,295	1,293	1,296	1,294	1,304	1,289	1,966	1,962

3.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이 영 임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19년)	2차 년도 (2020년)	3차 년도 (2021년)	4차 년도 (2022년)	5차 년도 (2023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953,700	1,683,800	2,344,000	2,344,000	2,344,000	**9,669,500**
사 무 관 리 비							
재 원 조 달							
의존재원	소 계	476,850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4,834,750**
	도 비	476,850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4,834,750**
자체수입	소 계	476,850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4,834,750**
	지 방 세	476,850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4,834,75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